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51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오세희·김태선·어기구

장종태 • 민병덕 • 이기헌

정진욱 · 김우영 · 민형배

문금주 · 정태호 · 이상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또는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가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전기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위험 우려가 높은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
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刻)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친
	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
	용주차구역이 지하 또는 옥내
	에 설치된 시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